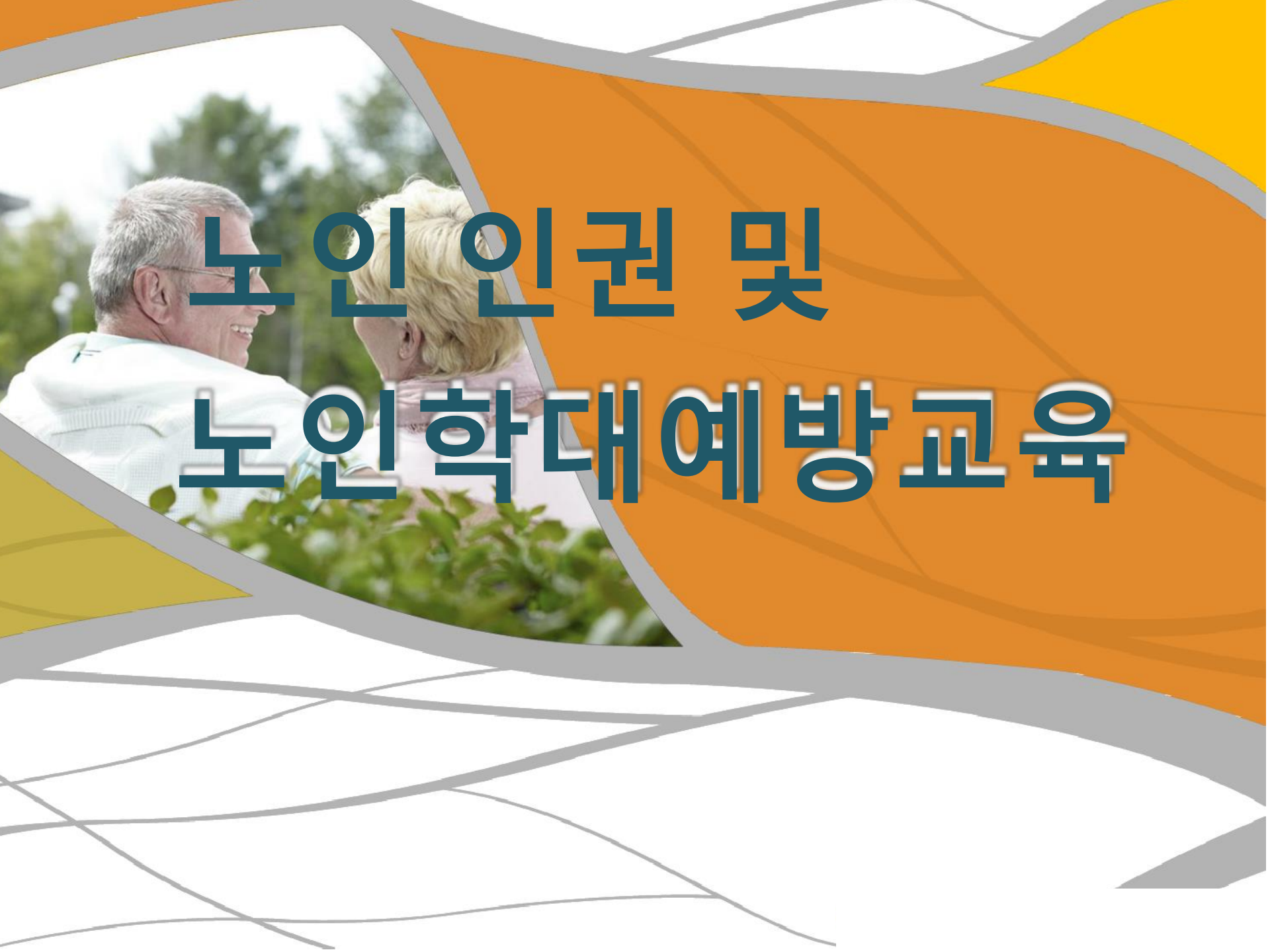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01. 인권이란?

02. 노인학대란?

03. 노인학대유형

0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0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06.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07. 노인학대유형 Q&A

08. 노인학대신고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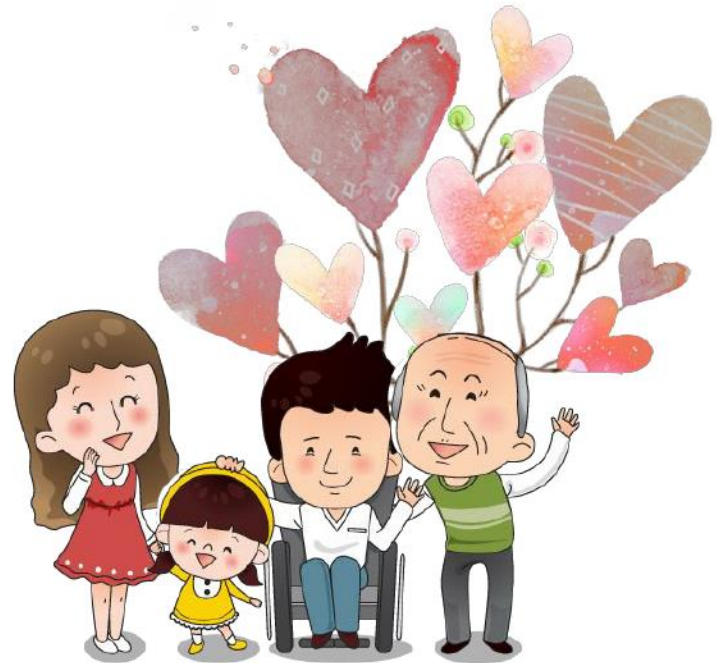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와 권리 확보 필요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 ➡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 존중 필요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 인권이란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1. 인권이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1)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여느 세대처럼 행복,
즐거움, 기쁨 추구

주요 원칙

어르신에 존경 받고 욕구 존중함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

안전하게 살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 안 됨



02.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 1 조 2의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을 하는 것을 말한다”

02

03

02. 노인학대란?

가정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
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
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
해지는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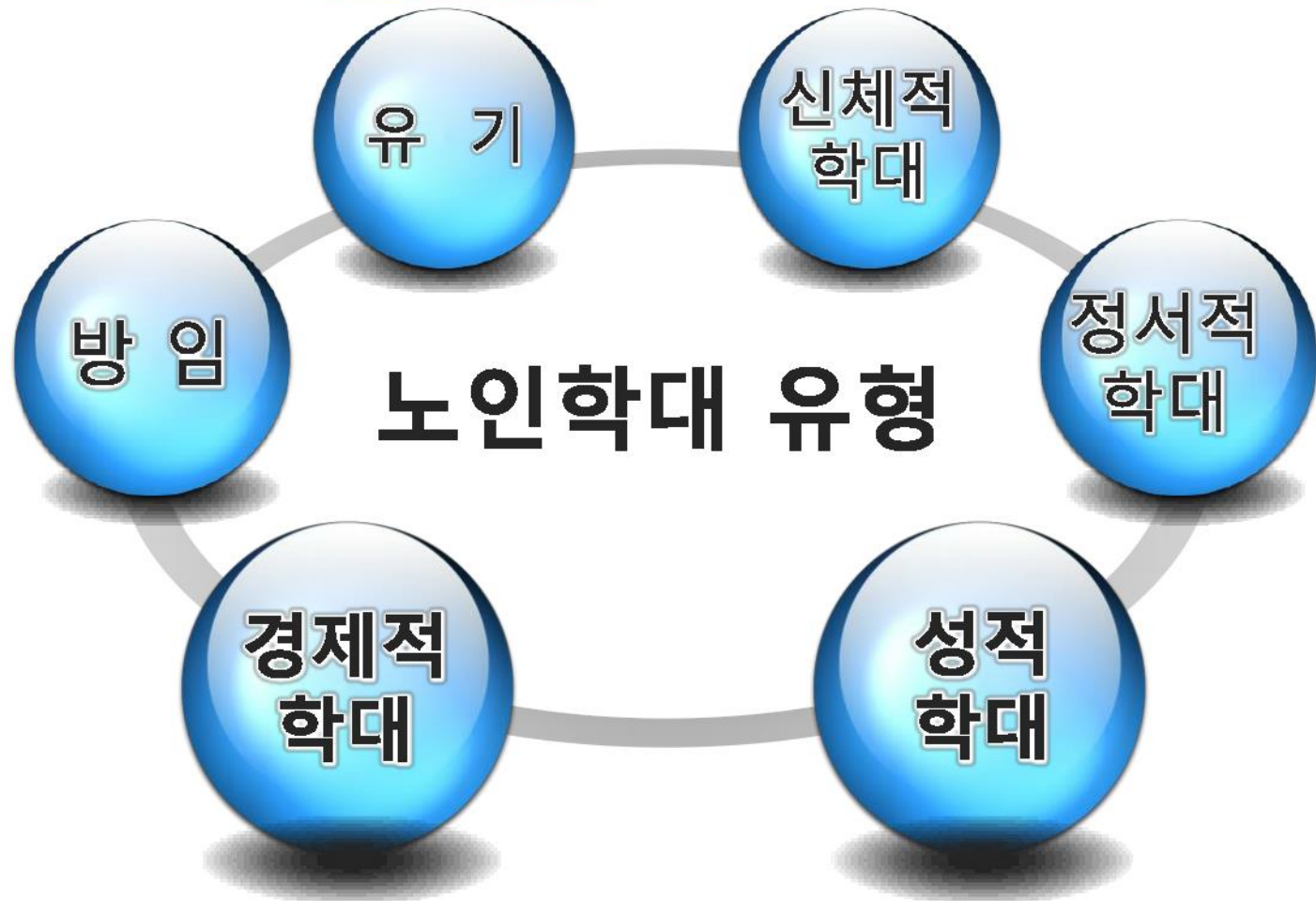
시설 학대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3.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유형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자꾸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여 화가난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침상에 묶어두고 팔과 다리를 꼬집고 때린 후 장시간 돌보지 않는다.



3. 노인학대의 유형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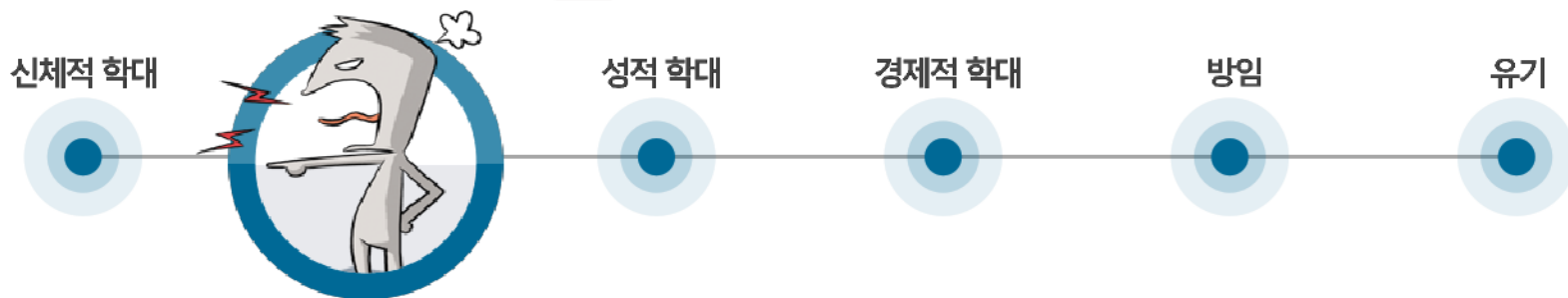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 신체를 함부로 다룬다
- 신체 구속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 단절시킴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임
- 원치 않는 일(노동) 강요

예측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3. 노인학대의 유형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성질환으로 기저귀를 착용하신 할아버지가 대변을 보시고 불편하신탓에 기저귀를 벗어 던지셨다. 화가난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 면전에 “노인네 도대체 뭘하는 짓이여 내가 이거 치울려고 여기서 일하는줄알어!? 어휴!! 짜증나!!” 말하며 화를 낸다.



3. 노인학대의 유형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함
- 말을 걸지 않고 대화 하지 않음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함
- 사회활동, 연락 등 방해
- 위협, 협박
- 고함, 욕설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함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킴

예 측 징 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노인학대의 유형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A할머니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신다. 요양 보호사는 기저귀 교체시마다 옆에 있는 B할머니가 보고 있어도 같은방 할머니가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며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기저귀를 교체하였다.



3. 노인학대의 유형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나 강요, 시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 일부를 만짐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 (목욕)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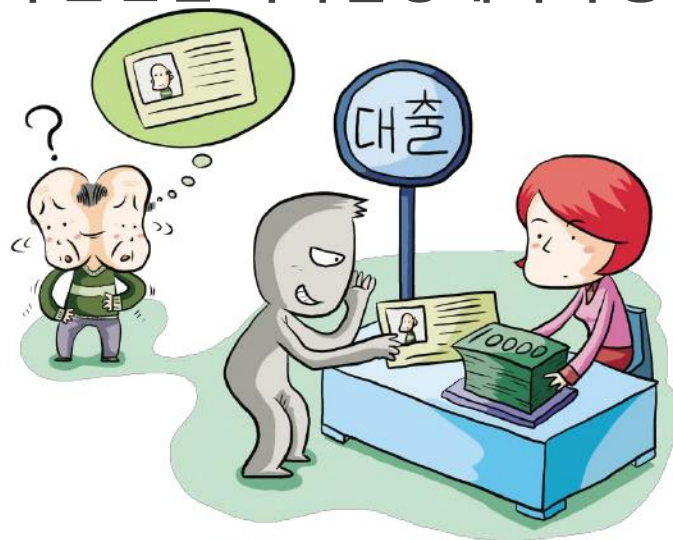
방임

유기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A요양원 원장은 할머니에게 통장 인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수건과 의복을 구입한 후 같은 방 어르신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대표적 행위

-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 부조 급여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 빌린 돈 및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
-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 허락 없이 신용 도용하여 이익을 취함
- 대리권 악용
- 부양 전제의 재산상속 약속 및 증여 후 부양의무 미이행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평소 본인부담금 문제로 보호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요양원 원장은 어느날 갑자기 낙상으로 골절된 할머니의 골절을 보호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의료적 처치 없이 요양원에서 수일간 관리 하였다.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대표적 행위

<방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 방치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함
-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하지 않음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지원 하지 않음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처치 하지 않음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함

예측징후

<방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대표적 행위

<자기방임>

-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 거부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음
- 알코올 남용 및 자살시도

예측징후

<자기방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 자살을 시도함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요양원 원장은 A할머니의 보호자가 3개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괴심한 마음에 A할머니를 예전에 살던 집
모셔다 놓고 보호자에게는 문자로 알려준
할머니를 집에 홀로 둔 채
기관으로 복귀하였다.



3.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 두절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 거부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노인학대유형 법적 처벌 기준

노인학대 유형별 법적 처벌 기준

행 위	징 역	벌 금
신체에 상해 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신체에 폭행 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유기 나 방임 행위 구결 하게 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 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하는 행위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신고인 신원노출 금지위반	1년 이하	3백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및 업무방해	2백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01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뢰
- 0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03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01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 참여
- 02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

7. 노인학대유형 Q&A



Q 1

노인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A 경제적 학대



Q 2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A 신체적 학대



Q 3

골절된 어르신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한다. A 방임



Q 4

노인에게 반말을 하며 가르치려 한다. A 정서적 학대



Q 5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A 성적 학대



Q 6

노인 스스로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A 자기방임



Q 7

몇 달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노인을 예전에 살던 집에 두고 온다. A 유기

8. 노인학대 신고 방법은?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복지법제57조』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 보호, 수용, 지지적으로 노인의 입장에서 친절히 대한다.
 - 체념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
 - 되풀이 되는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
 - 이야기 할 때 목소리를 낮춘다.
 - 몸을 만져준다(스킨십).
 - 언제나 의욕을 북돋워 준다.
 -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